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6. 13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189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구청장(문화도시과)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출연금 내역

- 출연기관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 출연근거(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산) 제4항
- 출연내용 : ‘강남합창단’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 합창단 인건비 증액사유

- 공연횟수 대비(연14회 이상) 연습시간 부족(⇒ 연습 인정시간 연장)
- 타 지자체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는 합창단원 임금 인상 (남성단원 2014년 이후, 여성단원 2018년 이후 임금 동결)

○ 출 연 금 : 금129,000,000원(금일억이천구백만원)

○ 산출기초

○ 강남합창단 임금인상 : 금129,000,000원

○ 임금인상 내역

- 연습 인정시간 연장 : 주 4시간(월 16시간) ⇒ 주 6시간(월 24시간)
- 합창단 시간당 임금인상

【강남합창단 임금인상 내역】

(단위 : 원)

직위	단원수	시간당 임금		월 임금		비고
		현재	인상	현재 (월16시간)	인상 (월24시간)	
지휘자	1	87,500	-	1,400,000	2,100,000	
단무장	1	37,500	50,000	600,000	1,200,000	
반주자	1	50,000	-	800,000	1,200,000	
파트장	4	18,750	31,540	400,000	850,000	
일반단원	40	18,750	31,540	300,000	750,000	

※ 단무장 : 반주자 임금과 동일하게 조정

※ 파트장 : 일반단원 임금 + 10만원 추가(종전과 동일)

※ 일반단원 인상률 : 전국 12개 지자체 합창단 시간당 평균 임금 기준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합창단 인건비 (기편성)	지급액 (1~6월)	잔액 (A)	인상후 소요액(7~12월) (B)	차액 (A-B)	비고
196,800	98,400	98,400	227,400	△ 129,000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관계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산)제4항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구청장(문화도시과)가 제출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것임.
-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남문화재단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할 수 있음.
- 이에 문화도시과는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강남문화재단 합창단의 공연이 연 14회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연습시간이 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합창단원 임금 인상분을 출연하려는 것임.

합창단 (정원 47명)	○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기획공연 등 연 14회 이상 공연	
	정기연주회	○ 연 2회 (예술의전당, 장천홀)
	찾아가는 음악회	○ 연 8회 (학교강당, 야외공원 등 문화공간)
	기획공연	○ 연 4회 (실내공간)
	초청공연	○ 그 외 중·소규모 초청공연
○ 연14회 이상 공연 및 단원 평가 등		

- 임금인상 내역은 「강남문화예술단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근거한 것임.
- 기존 월 16시간(1주당 2회 4시간*4주) 연습하던 것을 월 24시간으로 늘리고, 그동안 동결되었던 시간당 임금 단가를 인상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른 인상분 총 1억29백만원을 책정하고 요구하는 것임.
- 예컨대, 파트장과 일반단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단원 2014년 이후, 여성단원 2018년 이후 동결된 후, 약 68.5%를 인상하려는 것임. 시간당 18,750원에서 시간당 31,540원으로 인상하는 것임.

<p>제12조(근무시간) ① 교향악단 단원의 연습 및 공연시간은 연평균 포괄산정하여 주30시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연습은 악기 군별 연습을 포함하여 주4회, 매회 10시부터 15시까지 실시 하며 중간의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 2. 공연시간은 준비 및 연주시간으로 구분하며, 준비시간은 공연 전 무대연습 1시간 전부터 하되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연주시간은 그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으로 한다. 3. 예술감독은 제1호, 제2호의 연습일과 공연시간 등을 주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단원과 협의하여 조정 운영하거나 특별연습을 할 수 있다. <p>② 합창단 단원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연습은 주2회, 매회 2시간씩 실시한다. 2.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과 협의하여 조정 운영하거나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p>③ 각 예술단 단원 및 예술감독은 제13조 제1항에 의한 연간 공연 및 행사계획에 따라야 한다.</p>

- 이는 월 24시간 연습하는 ‘구리시’ 수준으로 맞춘 것이기에 이번 인상폭이 클 뿐, 타지자체와의 비슷한 단가로 그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라 할 것임.

【2022년 기준 주요지자체 합창단 급여수준】

번호	지자체	근무시간	기본급(월)	시간당급여	주4시간 환산임금	주6시간 환산임금	4대보험 가입현황
1	양주	주6시간	75만원	31,250원	50만원	75만원	고용,산재,국민연금
2	용인	주12시간	168만원	35,000원	56만원	87만원	고용,산재,건강보험
3	의정부	주9시간	92만원	25,556원	41만원	61만원	고용,산재,국민연금
4	시흥	주9시간	95만원	26,389원	42만원	63만원	4대보험
5	남양주	주9시간	143만원	39,722원	63만5천원	95만원	4대보험
6	당진	주12시간	147만원	30,625원	49만5천원	74만원	4대보험
7	아산	주12시간	147만원	30,625원	49만5천원	74만원	4대보험
8	구리	주6시간	85만원	35,417원	56만5천원	85만원	고용,산재
9	김천	주2시간	65만원	81,250원	130만원	195만원	
10	파천	주9시간	110만원	30,556원	56만5천원	85만원	고용,산재
11	서산	주6시간	70만원	29,167원	46만5천원	70만원	
12	하남	주6시간	64만원	26,667원	64만원	64만원	
13	동두천	주4시간	50만원	31,250원	50만원	75만원	
14	김해	주11시간	140만원	31,818원	50만9천원		4대보험
평균		주8시간	102만원	31,540원	57.29만원	79만원	

-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인건비 운영은 기존 인건비 196,800천원으로 6월까지 집행하고, 잔여분 98,400천원을 향후 하반기 6개월 소요액 227,400천원과 차감하게 될 것임. 그 결과 발생하는 부족분이 1억29백만원임.

<강남합창단 임금인상 내역 산출기초>

(단위 : 원)

직위	단원수	월 임금		산출기초
		현재 (월16시간)	인상 (월24시간)	
			계	227,400천원
지휘자	1	1,400,000	2,100,000	1명×6개월×2,100천원=12,600천원
단무장	1	600,000	1,200,000	1명×6개월×1,200천원=7,200천원
반주자	1	800,000	1,200,000	1명×6개월×1,200천원=7,200천원
파트장	4	400,000	850,000	4명×6개월×850천원=20,400천원
일반단원	40	300,000	750,000	40명×6개월×750천원=180,000천원

- 강남합창단은 최근 수년간 임금이 동결되었고, 타지자체에 비해 재정력이 넉넉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강남구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도권 타 지자체 수준보다 그동안 임금이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에 그 부족분을 인상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인건비는 큰 수요가 없는 이상, 매년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끝.

2023년도 강남문화재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191
----------	-----

제출년월일 : 2023. 6.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출연금 내역

가. 출연기관 :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나. 출연근거(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제1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산)제4항

다. 출연내용 : ‘강남합창단’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 합창단 인건비 증액사유

- 공연횟수 대비(연14회 이상) 연습시간 부족(⇒ 연습 인정시간 연장)
- 타 지자체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는 합창단원 임금 인상
(남성단원 2014년 이후, 여성단원 2018년 이후 임금 동결)

라. 출 연 금 : 금129,000,000원(금일억이천구백만원)

마. 산출기초

- 강남합창단 임금인상 : 금129,000,000원
- 임금인상 내역
 - 연습 인정시간 연장 : 주 4시간(월 16시간) ⇒ 주 6시간(월 24시간)
 - 합창단 시간당 임금인상

【강남합창단 임금인상 내역】

(단위 : 원)

직위	단원수	시간당 임금		월 임금		비고
		현재	인상	현재 (월16시간)	인상 (월24시간)	
지휘자	1	87,500	-	1,400,000	2,100,000	
단무장	1	37,500	50,000	600,000	1,200,000	
반주자	1	50,000	-	800,000	1,200,000	
파트장	4	18,750	31,540	400,000	850,000	
일반단원	40	18,750	31,540	300,000	750,000	

※ 단무장 : 반주자 임금과 동일하게 조정

※ 파트장 : 일반단원 임금 + 10만원 추가(종전과 동일)

※ 일반단원 인상률 : 전국 12개 지자체 합창단 시간당 평균 임금 기준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합창단 인건비 (기편성)	지급액 (1~6월)	잔액 (A)	인상후 소요액(7~12월) (B)	차액 (A-B)	비고
196,800	98,400	98,400	227,400	△ 129,000	
				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관계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산)제4항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